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김성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98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2.

발 의 자 : 김성찬 · 이은권 · 김승희
이종명 · 홍문표 · 김도읍
윤종필 · 윤한홍 · 임이자
주광덕 · 성일종 · 김재경
주승용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 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 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후단 신설).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(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)의 장과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<후단 신설></u></p>	<p>제12조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 이 경</p> <p><u>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(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)의 장과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</u></p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